



관세국경을 지켜온 50년  
국민안전을 위한 100년



**보도자료**

OPEN www.customs.go.kr  
대변인실 042-481-7616~7

보도일자	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<b>힘내라 대한민국</b>
배포일자	2020. 7. 20. (월)	담당부서	조사총괄과
담당과장	박남기 (032-452-3410)	담당자	김재건 팀장 (032-452-3409)

## 인천본부세관, 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실시

- 불량먹거리·유해 수입식품의 차단 및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-

- 인천본부세관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7.20.부터 연말까지 24주간 불법먹거리, 유해식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 - 이번 단속은 코로나-19 감염 사태의 장기화 및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수입 먹거리를 차단하고,
  -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식품 등의 국산둔갑 행위,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 등의 국내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.
- 주요 단속유형은
  - 기준 수치를 초과하거나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(살충제, 식중독균 등)이 포함된 저품질의 농·수·축산물 밀수입 행위
    - ☞ 관세법·식품위생법 위반
  -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·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, 유해한 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식품(건강기능식품, 다이어트 제품 등)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행위
    - ☞ 관세법·식품위생법·건강기능식품법 위반

- 식품검역 대상물품을 비대상으로 신고하거나,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식품검역 없이 수입·유통하는 행위
    - ☞ 관세법·식품위생법·수입식품특별법 위반
  - 정부나 인증기관의 허가·승인 등의 사항을 허위로 표기하거나, 인증 비대상인 것처럼 표기하여 부정수입하는 행위
    - ☞ 관세법·약사법·화장품법·의료기기법 위반
  -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불법 취득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.
    - ☞ 관세법·대외무역법 위반
-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본부 및 산하세관 소속 수사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별도 지정하여 보건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,
-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용 없는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,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입 이후의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여 부당이득까지도 책임 환수할 계획이다.
- 또한,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국내 반입의 최일선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.